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17.

동 해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25조에 따라 낙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및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낙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 낙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수역 해안선으로부터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단, 2톤 미만 선외기 낙시어선은 3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제5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유어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5.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 등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안전운항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바다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한다.
6. 선원 및 승객 전원은 어선의 입·출항 및 항해 중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기타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9.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 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 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낚시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3.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타 시·군 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명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고시 제2015-60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는 폐지한다.